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대학 대학원생 회칙

## 제 1장 총 칙

제 1조(적용) 이 회칙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대학 대학원생의 자치와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조(목적) 대학원생 상호 친목과 학술활동의 발전에 목적을 둔다.

제 3조(구성) 대표자 1인과 대학원생 원우로 구성된다.

## 제 2장 원우대표

제 1조 (원우대표자 선정) 매년 2학기말, 2기 또는 3기 원우로

(1) 원우대표를 희망하는 자

(2) 전임자의 추천

을 통해 원우대표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가 여러명일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제 2조 (임기) 원우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원우대표자의 임무

(1) 경제금융대 대표자는 대학원 중앙위원회에 소속되며, 중앙위원회의 회의, 행사 참석 및 의견을 제시한다.

(2) 원우대표자 1인은 경제금융대 대학원 원우의 대표 자격으로서 다음의 행사 (1,2학기 OT, 경제금융대학 예산위원회)에 필수로 참여하고, 원우를 대표한다.

(3) 원우대표자는 원우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경제금융대학 RC 행정팀 대학원 업무 담당 직원, 경제금융대학 RC 행정팀장, 경제금융학과 학과장, 경제금융대학 학장에게 건의한다.

(4) 원우대표자는 매학기초 대학원생 연구실 신청을 받고, 배정을 감독한다.

(5) 원우대표자는 대학원 사물함을 배정한다.

제4조 (장학금) 경제금융대학 원우대표는 소정의 장학금을 행정실로부터 지급받는 대상이다.

## 제 3장 대학원 연구실 배정

제 1조 (배정대상)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2조 (배정원칙) 대학원생 연구실(503호,504호)배정은 대학원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선발 및 배정한다.

- 1순위) 지난학기에 연구실 사용한 학생 중 희망자\*\*\*
- 2순위) 연구조교 우선 선발
- 3순위) 전일제 학생들을 우선 선발
- 4순위) 박사과정 우선 선발(박사->석박통합->석사 순으로 선발)
- 5순위) 성적우수장학생 우선 선발
- 6순위) 전일제 학생 중 기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
- 7순위) 방장 및 방원의 협의에 따라 선발

\*\*\*단 기존 연구실 사용자중 석사과정은 연구등록 후 1년, 박사과정은 연구등록 후 3년을 연구실 사용기한으로 제한한다.

(1) 연구실 사용은 방장 및 방원의 협의에 따라 사용한다.

제 3조 (배정시기) 대학원생 연구실은 해당 학기 오티 후 신청서를 받아 해당인원의 공석에 맞게 새로 선발한다.

제 4조 (배정취소) 대학원생 연구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때, 배정이 취소되며, 기존 신청자 중 순위가 높은 학우가 선발된다

제 5조 배정이 되지 않은 학우는 배정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 제 4장 대학원 사물함 배정

제 1조 (원칙) 대학원생 사물함(지하1층 위치)배정은 대학원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선발 및 배정한다.

- |               |                    |
|---------------|--------------------|
| 1순위) 지난학기 사용자 | 2순위) 연구실, 랩실 미 배정자 |
| 3순위) 연구조교     | 4순위) 전일제 학생        |
| 5순위) 높은 기수    | 6순위) 성적우수장학생       |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원우의 90%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한다.  
단, 투표에 미응답자는 찬성으로 간주한다.